

'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1. 제안이유

- '92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'91년도에 도정조정위원회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였으나
-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등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도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

가. 재산의 취득

- 산림청고시 제 91-18('91.12.3)호에 의거 지정고시된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지구내 관리사등 주민편익시설 신축
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-1번지내 건물 7동 191.41㎡
(관리사 1동 82.56㎡, 정자1동 23㎡, 화장실 1동 19.81㎡, 취사장 1동 16.51㎡, 산막 3동 49.53㎡)

나. 재산의 매각

- 용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잡종재산(폐천부지)을 토지개발공사에 매각
 - 청주시 용암동 770-70번지의 4필지 1,105㎡
- 청주시 복대지구 연결 도로(복대동-중부I.C진입로간)공사에 편입되는 농촌진흥원 부지 및 지장물을 청주시에 매각
 - 청주시 복대동 266번지의 2필지 624㎡
 - 청주시 복대동 266-15번지내 경비실 1동 19.83㎡
- 건축법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를 그 점유자(민원인)에게 매각
 - 청주시 서문동 165-1번지의 1필지 105.7㎡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
-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
-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(안)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체 : 별첨

'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

일 반 회 계

'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총 청 북 도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		시 수 량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, 성명
	지 목	소 재 지					
계			191.41	132.500			
1	건 물	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-1번지	191.41	132.500	92년12월	자연휴양림 조성계 획지구내 관리사등 주민편익시설 신축	건물 신축

'9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(7-4)

충청북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대상수량	과표 또는 평가액	매각시기	매 각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주소, 성명
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 수량					
계			1,854.53	1,854.53	535,969			
1	토 지	청주시 용암동 770 -70번지의 4필지	1,105	1,105	302,454	92년 7월 ~10월	용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편입토지 매각	토지개발공사에 매각
2	토 지	청주시 복대동 226 번지의 2필지	624	624	182,460	"	복대지구 연결도로 공사 편입토지 매각	청주시에 매각
3	건 물	청주시 복대동 266 -15번지	19.83	19.83	6,661	"	복대지구 연결도로 공사 편입지장물 (경비실) 매각	"
4	토 지	청주시 서문동 165 -1번지의 1필지	105.7	105.7	44,394	"	대지면적 최소한도 에 미달하는 토지를 점유자(민원인)에게 매각	민원인에 매각

관계법령발췌

지 방 재 정 법	지방재정법시행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<u>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·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, 그 관리처분 결과를 심사·분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처분결과의 보고범위, 서식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</p>

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(1988.2.23제1592호)	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(1988.2.23제1519호)
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 계획)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등)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시 동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 관리계획서(별지 제13호 서식) 2. 공유재산 매매계획서(별지 제16호 서식) 3. 양여 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 4. 공유재산 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 5. 교환 계약서(별지 제19호 서식)